



교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
1 조 명칭 및 소재

본 교회는 "개인스빌 한인 교회 (Korean Baptist Church of Gainesville)" 라 칭하며 "5200 SW 63rd Blvd. Gainesville, FL 32608, USA"에 위치한다.

2 조 소속

본 교회는 미 남침례교 총회 Florida 주 총회와 NCFBA (North Central Florida Baptist Association) 지방회에 속한다.

3 조 목적 (신앙 고백과 사명)

- 가. 우리는 복음주의적 개신교회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수용하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강조점으로 삼는다.
- 나.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,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책임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을 믿는다.
- 다.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해 대표해서 대신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동정녀 탄생,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믿으며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.
- 라.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없이 기록된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표준인 것을 믿는다.
- 마. 우리는 타락한 죄인으로 중생의 절대적 필요성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상실치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믿는다.
- 바. 우리는 신자의 침례(세례)와 성찬을 신약교회의 성례로 준수한다.
- 사.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유기체적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과 자치성을 믿는다.
- 아.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서 이 시대에 순수하고 타협없는 복음을 선포하며,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한다
- 자. 우리는 본 교회가 속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,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.



4 조 재산

- 가. 본 교회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(토지, 건물), 기타로 구분되어 재단법인 게인스빌 한인 교회에 귀속되며 처리 및 납세는 재단법인의 재산 처리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구 성

5 조 본 교회의 구성원은 정회원, 준회원, 서리집사, 안수집사, 부교역자, 담임목사 및 선교사로 한다.

가. 준회원 자격

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

나. 정회원 자격

- 1) 준회원으로서 본 교회 3 개월이상 출석하여 침례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을 필한 자
- 2) 타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전입한 자는 본 교회 침례를 면할 수 있다.

다. 권리와 의무 (준회원, 정회원)

- 1) 성찬식에 참여한다.
- 2) 그리스도를 구주로 타인에게 증거한다.
- 3)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한다.
- 4) 예배, 기도회, 성경공부, 목장모임, 공식적인 교회행사 및 봉사에 참여한다.
- 5) 교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헌금생활을 한다.
- 6) 정회원 중 만 18 세 이상 된 자는 사무처리회 회원이 되며 투표권을 가진다.

라. 자격 상실 (준회원, 정회원)

- 1) 타지역으로 전출 및 이전할 경우
- 2) 특별한 사유 및 사전 통보없이 3 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치 아니한 경우
- 3) 기타 규정을 인정치 않고 자의적인 행동을 일삼는 경우
- 4) 기타의 경우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처리를 받은 경우

마. 복권 (준회원, 정회원)

- 1) 전항 2-4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본인의 회개와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복권할 수 있다.

6 조 담임 목사

가. 자격

- 1) 복음주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본 교회의 신앙고백과 사명에 동의하고 정관을



준수하는 자.

나. 권리 및 의무

- 1) 교회 내에 발생하는 모든 영적, 행정적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와 책임을 공유한다.
- 2) 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모든 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- 3) 침례, 성찬, 각종 예식 (혼례, 장례, 기타) 및 모든 공식적 예배와 기도회를 주관한다.
- 4) 본 교회 각종 의결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장직을 수행한다.
- 5) 부교역자, 안수집사의 추천권을 가지며, 서리집사, 목동 등 각종 인사에 대한 추천 및 임면권을 가진다.
- 6) 개인정보법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된다.

다. 청빙

- 1) 본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리회 재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을 받는다.
- 2) 청빙위원회의 구성원은 정회원으로 본 교회 2년 이상 참석한 자로 제직회에서 선임하며 사무 처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라. 사임

- 1) 본인의 사임 요청에 따라 청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받을 시
- 2) 사무처리회 재석인원 2/3 이상의 동의로 사직을 권유 받을 시
- 3) 공상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 시
- 4) 본항 1, 3 절은 제직회에서 임명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마. 정년

- 1) 담임목사의 정년은 70 세로 하며 65 세로부터자의 정년을 요청할 수 있다.
- 2) 은퇴한 목사는 원로목사로 예우한다.

바. 안식년

- 1) 담임목사의 안식년은 6년 근속 후 1년으로 하며 사례비집행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.

사. 은퇴 및 퇴임 사례비

- 1) 담임목사의 은퇴 사례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근속기간	산출기준	비고
10년 미만	최종급여 * 근속기간 * 1	최종급여(마지막 3달의 평균적)라 함은 본봉, 도서비, 목회활동비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 (휴가비, 출장비는 제외한다.)
10년-20년	최종급여 * 근속기간 * 1.5	
20년 이상	최종급여 * 근속기간 * 2.0	



- 2) 사망시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별도규정을 제직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- 3) 퇴직 급여는 은퇴 급여를 기준으로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7 조 부목사

가. 자격

- 1) 복음주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자.

나. 권리와 의무

- 1) 담임목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2)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목회사역에 종사한다.

다. 사임 및 해임

- 1) 사임: 본인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, 서면으로 사임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하고,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한다.
- 2) 해임: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담임목사가 최종 결정한다

라. 임기 및 재신임

- 1) 부목사의 임기는 부임 후 2 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를 통해 매 2 년 정기적인 재신임 절차를 거친다.

8 조 전도사 (유급직)

가. 자격

- 1)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

나. 권리 및 의무

- 1) 담임목사 및 부목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한다.

다. 사임

- 1) 사임: 본인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, 서면으로 사임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하고,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담임 목사가 최종 결정한다.

- 2) 해임: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담임목사가 최종 결정한다.

라. 임기 및 재신임

- 1) 전도사의 임기는 부임 후 2 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를 통해 매 2 년 정기적인 재신임 절차를 거친다



9 조 선교사

가. 본 교회 선교사 규정에 따라 정한다.

10 조 안수집사

가. 자격

- 1) 본 교회의 제직으로서 3년 이상 섬기며 예배와 봉사에 헌신한 자
- 2) 타교회에서 안수받은 직분자는 본교회에서 제직으로 1년 이상 섬긴 후에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.
- 3) 본 교회의 목양방침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나. 권리 및 의무

- 1) 본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양 사역과 공적모임에 헌신한다.
- 3) 목동과 목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도우며 목회자와 목동 간의 소통과 친교에 힘쓸 책무를 가진다.
- 3) 임기를 마친 안수집사는 자문위원으로 섬길 수 있다.

다. 선출 방법

- 1) 본 교회의 정회원 50명에 1명 이내로 한다.
- 2) 선출된 안수집사 후보 중 아래 세부 선출 방식에 의해 사무처리회의 심의와 투표를 거쳐 안수집사를 선출한다.

<세부 선출 방식>

- a. 10조 가항에 충족되는 후보들을 목회실에서 검토 후 제직회에 상정하여 당해 선출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다득표 순으로 안수집사후보로 선출한다. 후보자는 안수집사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.
- b. 선출된 후보자들은 목회자와 일정기간 안수집사 사역을 주지한다.
- c. 무기명투표로 사무처리회 재석인 2/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안수집사로 선출한다.
- d. 당 해의 선출인원 불 충족시에는 사무처리회 재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- e. 2차 투표시에는 1차 투표에서 2/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중 다득표순으로 충원해야 할 인원의 1.5 배수 인원을 후보로 선정한다. 무기명 투표로 사무처리회 재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안수집사로 선출한다.
- f. 선출된 안수집사는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거쳐 안수식을 한 후에 안수집사로 임직한다.



라. 사임

1) 자의사임

임기중 사임을 원할시에는 안수집사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2) 권고사임

안수집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불이행시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처리회의 재석인원 2/3 이상의동의로 사직을 권유받을 시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.

마. 임기

1) 안수집사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. 재임의 의사가 있는 현 안수집사는 상기 선출방식으로 재 선출될 수 있다.

2) 결원시 다. 항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총원하되 그 임기는 4 년으로 한다.

11 조 서리집사

가. 자격

1) 등록교인 (정회원 및 준회원)의 30%내외로 선임한다.

2) 정회원으로 6 개월 이상 교회에 참석한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은자, 혹은 목동으로 임명된 자.

나. 권리와 의무

1) 각자의 기능에 따라 사역협의회 각 부서 및 목장에 소속하여 직무를 분담, 책임진다.

다. 임기

1) 서리집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 초에 선임한다.

제 3 장 의결기관

12 조 사무처리회

가. 본 교회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담임목사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나.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월에 시행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 및 제직회 또는 정회원의 1/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
다. 사무처리회의 인준 및 표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) 담임목사 선임 및 사임 인준
- 2) 예산 결산의 인준 및 정관개정에 대한 인준
- 3) 담임목사 청빙 및 사임위원회 인준
- 4) 안수집사 선임과 연임에 대한 표결



5) 기타 안건의 심의 처리

13 조 제직회

- 가. 본 교회 제직의결기관으로써 담임목사, 안수집사, 서리집사로 구성한다.
- 나. 정기 제직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, 임시제직회는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, 또는 제직 1/2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- 다. 제직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) 사무처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및 집행
 - 2) 예산, 결산의 심의 및 정관개정에 대한 심의
 - 3) 각 사역 협의 위원장으로부터 활동상황을 보고받는다.
 - 4) 부동산 처리에 대한 의결
 - 5) 예산외 \$5,000 이상의 집행에 관한 논의
- 라. 제직회원은 실행부서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 하며,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조직과 운영

14 조 목장

- 목장은 본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로서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한다.
- 가. 본 교회는 사역의 의무와 권한을 각 목장에 부여하여 기본적인 교회 활동을 목장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간다.
- 나. 목장은 4-6 세대로 구성되는 교회 내의 작은 교회들로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배와 성경공부, 기도모임, 전도 활동 등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며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룸을 목적으로 한다.
- 다. 목동: 목장의 리더로 목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돋는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. 또한 목원들이 교회의 친교, 봉사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돋는다.
- 라. 초장: 4-6 개의 목장으로 구성된다.

15 조 실행부서

- 가. 담임목사의 영적, 행정적 모든 사역을 보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배부, 재정부, 선교부, 친교부, 관리부 등 다수의 부서로 구성된다.



- 나. 부서들은 필요에 따라 목회실과 부서장 및 안수집사들과의 협의 아래 설립/해체한다.
- 다. 각 부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소속 위원회 및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- 라. 각 부서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한다.
- 마.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
- 바.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과 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는 안수집사의 협력 및 감독을 받는다.

16 조 담임목사는 직무의 효율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목회 협력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가. 상설기구

- 1) 목회실: 담임목사를 보좌하며, 담임목사로 부터 위임받은 목회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2) 감사실: 회계감사

나. 비상설 기구

- 1) 자문위원회: 담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2) 인사위원회: 안수집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- 3) 청빙위원회: 정회원으로 본 교회 2년 이상 참석한 자로 제직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리회에서 인준을 받아 구성되며 담임목사의 사임과 청빙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.
- 4) 건축위원회: 담임목사의 추천 받은 자로 제직회에서 인준하며 신규 건축 및 부지 선정 등의 일을 담당한다
- 5) 기타 소위원회

17 조 직무 대행

담임목사 부재시 직무대행은 부목사, 안수집사 순으로 대행한다.

제 5 장 의결기관의 정족수

18 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모든 의결기관의 정족수는 재적인원 1/2의 출석과 재석의원 1/2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장 회계연도

19 조 본 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

제 7 장 정관 개정

- 20 조 정관의 개정은 담임목사의 요구나 제직 1/4 또는 정회원 1/4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발의될 수 있다.
- 21 조 제직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상정되며 제직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에서 재석인원 2/3 의 찬성에 의해 개정안이 인준된다.

제 8 장 부칙

- 22 조 본 정관에 명시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침례교회의 관례와 관습에 따른다.
- 23 조 본 정관은 사무처리회 인준일로부터 발효한다
- 24 조 본 정관은 2025년 12월 7일부로 개정되었다.